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아동가족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아동가족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달서아이꿈센터 이용료(프로그램 체험비 등) 감면대상 범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육아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육아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용료의 감면 규정 조례안 제8조제2항제6호 중 “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을 “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3. 4일부터 3.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4.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달서아이꿈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4049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4. 5.
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
(아동가족과장)

1. 제안이유

- 이용료(프로그램 체험비등)의 감면대상 범위를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여 육아가정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- 달서아이꿈센터 이용료의 감면대상 범위 확대(안 제8조제2항제6호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3. 4.~3. 25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6호 중 “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을 “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</u></p> <p>7. ~ 9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조(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</u>-----</p> <p>7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【관계법령】

□ 아동복지법

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·오락 시설, 교통시설,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